

「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 
정책기반 조성 연구」  
과업지시서

2026. 4

## I 과업개요

- 과업명 : 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기반 조성 연구
- 과업목적 : 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 및 지속가능한 고용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
-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~ '26. 12월 (약 8개월)
- 과업예산 : 310백만원 (VAT포함) \* 사업계획 변경시 예산변동 가능
- 계약방식 : 제한경쟁입찰 (협상에 의한 계약)
- 주요과업
  - 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
    - 어업경영체(어업인·어업법인), 고용인력 등 표본 5천 건 이상
    - 조사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 : 7천 건 이상
    - 어업 분야에 맞는 고용인력 실태조사 방법, 범위, 조사항목 등 설계
  - 기타 정책과제 대비 조사 설계 및 시행
  - 국가승인통계 대비 실태조사 품질관리 지원 등
  - 조사결과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보고 작성
    - 실태조사 및 심층·기획과제 결과분석을 통한 주요 시사점 도출, 어업고용인력지원 정책 수립 기반 활용 방안 마련 등
  - 외국인 어선원 육성 계획수립 연구
  - 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지원 등

- 본 과업내용은 「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기반 조성」의 기본내용과 방향 등에 관한 최소한 요건을 기술함
- 연구제안자는 본 사업에 부합하고, 효율적·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용, 추진방법, 예산 등을 보완·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

### 가. 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

- (주요내용) 「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」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실태조사 범위를 기본적으로 포괄

※ '26년 심층주제 : 제6조제2항제2호(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)

**제6조(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) ②**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별·업종별·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
2.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3.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
4.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5.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여성·외국인·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(표본구성) 어업경영체(어업인·어업법인), 고용인력 등 표본 5천 건 이상
- (모 집 단) 모집단 규모 파악을 위한 조사 7천 건 이상
- (대상년도) 2025년 ~ 2026년
- (항목설계) 어업 분야에 맞는 고용인력 실태조사 방법 및 항목 설계
  - 실태조사 관련, 유관 부처(고용노동부, 법무부, 농식품부 등) 자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조
- (조사방법) 전문성이 있는 조사원\*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
  - \* 유사 조사 경험을 보유한 조사원 선발 및 교육·관리 실시

## 나. 어업고용인력 통합관리 기반 마련 조사

- (주요내용) E-9 이탈률 등 어선원 통합관리 기초자료 조사
  - (조사방법)
    - 고용노동부 통합자료를 활용한 선주 의견 및 데이터 해석
    - 전문성이 있는 조사원\*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등
- \* 유사 조사 경험을 보유한 조사원 선발 및 교육·관리 실시

## 다. 공공형 계절근로제 고도화를 위한 실태조사

- (주요내용) 어업고용인력 수급 정책과제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
  - (표본구성) 계절근로(E-8) 허용업종 영위 지자체 및 관내 회원조합 실무자 등 표본 60건
  - (조사방법) 전문성이 있는 조사원\*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등
- \* 유사 조사 경험을 보유한 조사원 선발 및 교육·관리 실시

## 라. 국가승인통계 대비 실태조사 품질관리 지원 등

- 국가승인통계 신청('26년 이후) 대응을 고려, 개선사항 제언 등 실태조사 품질관리 지원 전반
  -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지원 및 표본 설계 지원
  - 통계자료 DB 관리 지원 등

## 마. 조사결과 통계분석을 통한 결과보고 작성

- 2026년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(심층주체 포함) 결과분석, 어업고용인력 수급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
-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어업고용인력 통합관리 기반 마련(안) 제안
- 공공형 계절근로제 고도화 방안 제안
  - 現 제도 개선점 파악 및 현장과 제도 간 괴리 감소 방안 포함 등

## 바. 외국인 어선원 육성 계획수립 연구

- 외국인 어선원 입국 전 현지 실습 교육 실효성 검토
- 검토 내용 기반, 연안어업 외국인 어선원 현지 교육 계획(안) 수립
- 현지 교육 대안 마련

## 사. 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지원 등

## 1. 과업수행 일반지침

### 가. 과업 수행 기준

- 본 용역 과업은 관계법령, 정부의 각종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,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하거나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용역계약자는 최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,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나. 설계 변경조건

-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사정 등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범위, 대상이 변경되었을 경우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
-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하거나, 기타 발주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

### 다. 착수계 제출

- 착수계는 책임연구원 선임계, 용역수행계획서, 참여연구원 편성현황 등을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용역 수행계획서는 용역 과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, 세부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 라. 참여연구원

- 책임연구원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.

-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원은 용역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하며,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 또한,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.

#### 마.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

- 발주처가 용역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역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-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·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,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의를 표기하여야 한다.
- 용역계약자는 세부적인 연구의 방향·범위·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연구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발주처 검토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#### 바.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

-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계약자의 과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용역계약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, 과업추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

은 용역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.

사.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-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-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(하도급)을 주었을 때
- 과업 수행의 책임기술자가 용역업무 소홀 등으로 용역 업무 추진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

아. 계약에 관한 사항

- 발주기관과 수행업체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합의사항이나 계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와 계약 변경사항을 작성, 서명·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본 계약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수행업체가 책임을 지며, 「용역계약일반조건」 제23조에 따라,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,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,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- 계약서상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.



- 수행업체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.
- 수행업체의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수행업체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.

## 2. 성과보고 및 보안대책

### 가.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소유권

- 용역에서 발생한 지적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와 도급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,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본 사업 완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나. 과업수행 성과보고

- 보고회: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시간·장소 등을 결정하되 발주처에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생략 또는 실무회의(자문회의)로 대체할 수 있다
- 성과물
  - 최종 보고서 50부
  - 최종 보고서 한글 및 PDF 파일 (USB 2개)

### 다. 보안대책

- 도급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또는 자료 등을 작성할 경우, 외부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, 관리책임자 정.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,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.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도급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,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.
-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 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도급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, 누설·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.
- 도급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, 인쇄·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불량·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,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,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, 종료 전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
#### 라. 기타 과업자의 준수사항

- 용역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,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,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.(단,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-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